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운영규정

<극동규정 제221호> <시행일 2021.11.10.>

제　　정 2020.03.11.
개　　정 2020.08.24.
개　　정 2021.11.1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운영규정은 「학칙」제32조 제4항에 따라 연계·융합·학생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연계전공: 둘 이상의 학과가 상호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
2. 융합전공: 둘 이상의 학과가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전공
3. 학생설계전공: 학생이 본교에 개설되어 있는 최소 3개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수하는 전공

제2장 연계·융합전공

제3조(연계·융합전공의 신설 및 폐지) ① 연계·융합전공의 신설은 참여 학과 소속 전임교원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하며, [별지 1] 내지 [별지 3]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연계·융합전공의 신설 및 폐지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③ 연계·융합전공 신청자가 제6조 제4항의 최소 선발인원에 2년 연속 미달될 경우에는 해당 연계·융합전공의 신규 모집은 중단하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학기까지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제4조(주임교수) ① 주임교수는 참여학과 소속 교수들의 협의를 통하여 선출한다.

② 주임교수는 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, 전공지도 등 융합전공에 관한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.

제5조(연계·융합전공운영위원회) ① 연계·융합전공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와 참여 학과의 교원으로 구성된 연계·융합전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로 하고, 위원은 참여 학과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 단,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 및 연계·융합전공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맞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
2. 교과목 변경(폐지, 신설 포함)에 관한 사항
3. 학년별, 학기별 교과목 배정에 관한 사항
4.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5. 재학생 · 졸업생 및 산업체의 요구사안의 반영에 관한 사항
6. 해당 전공 이수자에 대한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

제6조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) ① 연계전공은 참여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·운영되는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편성하고, 융합전공은 참여학과의 교육과정표에 편성・운영되는 교과목과 융합전공에 필요한 새로운 교과목으로 36학점 이상 편성한다.

② 융합전공에 필요한 신규 교과목은 본교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강사, 비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8.24.>

③ 연계·융합전공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④ 연계·융합전공의 선발인원은 최소 15명으로 한다. 다만, 교육여건 및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.

제7조(이수 및 학점인정) ① 연계·융합전공자는 주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

② 연계·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연계·융합전공에서 편성·운영하는 교과목을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연계·융합전공 이수신청 전에 미리 이수한 교과목은 연계·융합전공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④ 소속학과(전공)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·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교차 인정의 범위는 최대 9학점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0.08.24.>

⑤ 연계·융합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며 졸업사정은 위원회에서 시행한다.

제8조(신청자격 및 절차) ① 연계·융합전공 지원자격은 2학기를 마친 학생으로서 2학년 1학기부터 정해진 기

간에 이수신청서 [별지 5]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융합전공을 지원하는 학생은 참여학과와 관계없이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9조(포기 및 변경) ① 연계·융합전공을 포기하려는 학생은 융합전공 이수 포기신청서 [별지 6]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연계·융합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취득 교과목의 학점은 소속 학과 심의를 거쳐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학위수여) ① 연계·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생에게는 [별표 1]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1조(학칙준용) 이 운영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학칙」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장 학생설계전공

제12조(학생설계전공 편성) ① 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 시 교육과정 편성은 전공의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54학점으로 한다. 단, 교과목 구성시 개론 과목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.
② 교과목은 전공선택 교과목으로만 편성하고, 실험·실습 교과목 편성은 제외한다.

제13조(이수 및 학점인정) ① 학생설계전공자는 주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②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③ 학생설계전공 이수신청 전에 미리 이수한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④ 소속학과(전공)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자기설계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교차 인정의 범위는 최대 9학점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0.08.24.>
⑤ 학생설계전공에서 지정한 소정의 학점을 「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이수표」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.
⑥ 학생설계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며 졸업사정은 소속학과가 시행한다.

제14조(신청자격 및 절차) 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.
②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1.10.>

제15조(포기 및 변경) ①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취득 교과목의 학점은 소속 학과 심의를 거쳐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16조(학위수여) 주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[별표 1]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7조(지도교수) 학생설계전공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관리와 운영을 위한 지도는 주전공의 지도교수가 담당한다.

제4장 기 타

제1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수요건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규정 제7조, 제14조의 이수요건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 연계·융합·학생설계전공별 전공 및 학위명

연계·융합·학생설계전공별 전공 및 학위명

구분	학과	전공명	학위명
☐ 연계전공 ☐ 융합전공 ☐ 학생설계전공		(한글)	(한글)
		(영어)	(영어)

연계·융합전공 신설・운영계획서

1. 연계·융합전공의 개요

전공명(한글)			
전공명(영어)			
학위명(한글)			
학위명(영어)			
관련학과	**주관학과**	대학	학과
	참여학과	대학	학과
		대학	학과
		대학	학과
		대학	학과
전공주임교수		**정원(학년당)**	

2. 연계·융합전공의 필요성

가. 연계·융합전공의 사회수요

나. 참여학과(전공)와의 차별성

3. 교육목표 및 기대효과

가. 교육목표

나. 교육과정 개요 및 개설 목적

다. 기대효과

4. 교육과정 운영계획 (*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)

가. 교육과정표: 전공학점: 최소 54학점 이상 편성(전공심화를 위한 15학점 추가 고려)

나. 교과목

(1) 기 개설 교과목:

(2) 신설 교과목(신설 교과목은 교과목 개요, 영문명칭 등 포함)

※ 필수교과목에는 ‘필수’ 표기

다. 타 학과(부) 전공 인정 교과목

라. 이수규정

- 이수체계도형태의 교과목 나열

- 선수과목 및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사항

마. 공간 확보

바. 실험실습 운영

사. 기자재 확보

아. 장학금 등 확보

자. 취업/진로 개발계획

차. 연간 예산규모

학생설계전공 신설계획서

<table>
<tr><td>소 속</td><td colspan="3">대학 학과(부) 전공</td></tr>
<tr><td>학 번</td><td></td><td>성 명</td><td>㉮</td></tr>
<tr><td>연 락 처</td><td colspan="3">이메일 : 전화 : 핸드폰 :</td></tr>
<tr><td>학생설계전공명</td><td>(국문명)
(영문명)</td><td>신청학점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전공 개요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신청 사유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위와 같이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합니다.

경 유
지도교수 학과장

20 년 월 일</td></tr>
<tr><td>유의사항</td><td colspan="3">① 신청하는 학생설계전공의 교과과정을 54학점 이상 구성하여야 함
② 소속 학과장,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작성하고, 본교 연계·융합·학생설계전공 운영 규정의 학생설계전공 관련 조항을 참고</td></tr>
<tr><td>첨부서류</td><td colspan="3">①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표(별지서식 제6호)
② 학생설계전공 이수계획표(별지서식 제7호)
③ 성적증명서 1부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극동대학교 총장 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 3] 연계·융합전공 참여학과 참여확인서

연계·융합전공 참여학과 참여확인서

연계·융합전공명(국문)	
연계·융합전공명(영문)	
주관학과(부)명	
전공주임교수	

위 연계·융합전공의 개설신청에 동의하고, 참여학과로서 대학 내 제규정을 준수하면서, 위 연계·융합전공의 발전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.

[별첨] 참여학과 교수회의록

20 년 월 일

00대학 00 학과

(대표) 학과장 (인)

극동대학교 총장 귀하

참여학과(부) 교원명부

학과(부)명				
참여교원 *참여여부는 O/X로 표시	**교원명**	**참여여부**	**교원명**	**참여여부**

참여학과(부) 연계·융합전공 개설 교육과정

학년	학기	이수 구분	교과목 번호	교과목명	학점		시수			비고
					필수	선택	시수	이론	실습	
학점 계										

[별지 4]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표

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및 이수계획표

■ **학생설계전공 명:**

□ **교육과정표**

대학	학과	교과목번호	교과목 명	학점	인정
계					

※심의: 연계·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는 교과목 중 해당 학생설계전공에 적합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'인정' 란에 '불가' 를 기재하고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은 '필수' 기재

□ **이수계획표**

학기 / 학년도	1학기		2학기	
	교과목 명	학점	교과목 명	학점

[별지 5] 연계·융합·학생설계전공 이수신청서

연계·융합·학생설계전공 이수신청서

	소속학과장	전공주임(지도)교수
확인		

1. 소속대학

대학		학과・부		전공	
성명		학년		학번	

2. 연계·융합전공 명 및 이수 유형

□연계 □융합 □학생설계전공 명	
이수 유형	복수전공

3. 학업성적

년도	학기	신청학점	취득학점	평점평균	비고

위와 같이 □연계 □융합 □학생설계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

극동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 6] 연계·융합·학생설계전공 이수 포기신청서

연계·융합·학생설계전공 이수 포기신청서

	소속학과장	전공주임(지도)교수
확인		

1. 소속대학

대학		학과・부		전공	
성명		학년		학번	

2. 연계·융합·학생설계전공명

□연계 □융합 □학생설계전공	

상기 본인은 학년도 제 학년 의 □연계 □융합 □학생설계전공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.

포기사유 :

년 월 일

신 청 인 :

극동대학교 총장 귀하